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44
----------	------

2023년 12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유만희 의원외 15명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1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유만희 의원)

1. 제안이유

- 출산가정 등의 양육 현실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돌봄 지원 사업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 가정 내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아이돌보미 사업의 지원 사항 확대(안제6조제1항제4호)

- 동 개정안은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등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u>아이돌보미 사업</u>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아이돌보미 사업 및 아이</u>

현행	개정안
5. ~ 8. (생략) ②·③ (생략)	<u>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u> <u>등 이용 활성화 사업</u>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공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였음.
 - 또한 2022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정책인 엄마아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인 영아 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시범운영하면서 2023년에는 등하원 전담과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 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지원사업>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① 영아 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 (’22년 6개구 → ’23년 25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양육자의 영아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 ○ (내용) 구별 전담돌보미 지정(25개구 총 800명), 특화교육(8시간), 전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시간당 1천원,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②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5개구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이용수요가 높은 등하원 시간대 미스매칭 해소 ○ (내용) 구별 전담돌보미 지정(5개구 상반기 300명→하반기 500명), 특화교육(2시간), 전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시간당 1천원, 1인당 월 최대 1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운영지역</th> <th>용산</th> <th>광진</th> <th>중랑</th> <th>서대문</th> <th>강동</th> </tr> </thead> <tbody> <tr> <td>500</td> <td>55</td> <td>80</td> <td>140</td> <td>90</td> <td>135</td> </tr> </tbody> </table>	운영지역	용산	광진	중랑	서대문	강동	500	55	80	140	90	135
운영지역	용산	광진	중랑	서대문	강동								
500	55	80	140	90	135								
③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5개구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맞벌이 가정 등 갑자기 아픈자녀의 병원동행 및 돌봄 지원 ○ (내용) 구별 전담돌보미 지정(5개구 내 모든 돌보미, 720명), 특화교육(2시간), 전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시간당 1천원 1인당 월 최대 5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운영지역</th> <th>성동</th> <th>동대문</th> <th>강북</th> <th>강서</th> <th>서초</th> </tr> </thead> <tbody> <tr> <td>720</td> <td>117</td> <td>144</td> <td>133</td> <td>186</td> <td>140</td> </tr> </tbody> </table>	운영지역	성동	동대문	강북	강서	서초	720	117	144	133	186	140
운영지역	성동	동대문	강북	강서	서초								
720	117	144	133	186	140								

- 아이돌보미 사업은 기본적으로 소득기준별로 이용료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소득기준별 정부지원 예시(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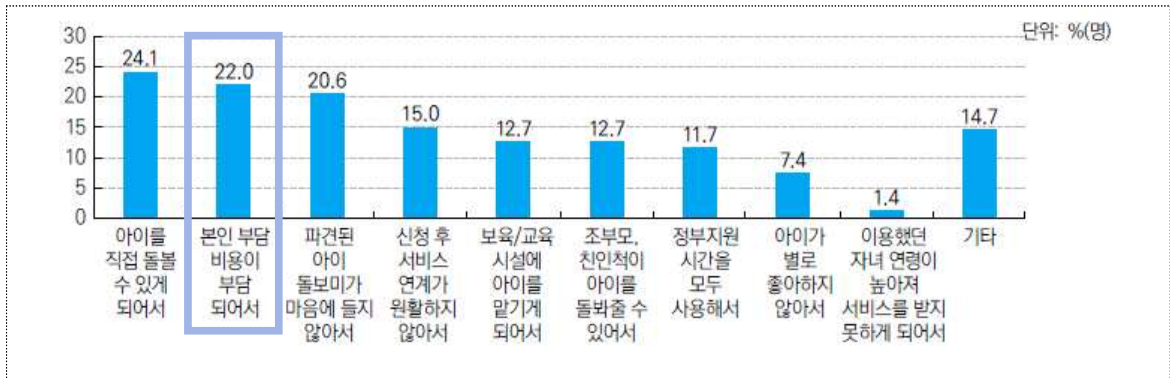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기본형 기준) (기본이용료 시간당 11,080원)				영아종일제 (기본이용료 시간당 11,080원)	
		만7세 이하		만8세~만12세 이하		3개월 ~ 36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2018)¹⁾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중단 사유 중 ‘본인부담 비용이 부담 되어서’가 22.0%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어서’(24.1%)에 이어 2번째로 높

1) 육아정책연구소(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은 것으로 나타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중단 사유>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광역지자체 3곳(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과 강남구, 도봉구를 포함한 기초 지자체 29곳에서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본인부담금 지원현황('23. 9월 기준)>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율				기간	소요예산 ('23년)	재원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경남	67%	25%	41%	40%	'23.7월~	1,854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70%
경북	100%	90%	90%	90%	'20년~	16,666백만원	도비 40% 시군비 60%
제주	40%	40%	40%	20%	'18년~	454백만원	도비 100%

- ※ 기초 지자체 : 서울(2), 부산(1), 인천(1), 경기(2), 강원(2), 충남(6), 전북(2), 전남(9), 경남(5)
 - ▶ 강남구 본인부담금 지원율: 가형 100%, 나형 90%, 다형 80%, 라형 50%
 - ▶ 도봉구 본인부담금 지원 : 다자녀 가정(소득 무관)에 시간당 1천원 지원
- ※ 서초구 자체사업 : 만 3개월~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월 50시간 아이돌봄 무료 지원

- 특히 서울 지역의 둘째 아동 이상 출생아동 수가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 기준을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양육 및 돌봄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가 매우 인정된다 할 것임.

<서울시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변화 추이>

구분	총계		첫째아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	비율	출생아수	비율	출생아수	비율
2013	84,066	(100.0)	48,248	(57.4)	35,818	(42.6)
2014	83,711	(100.0)	48,795	(58.3)	34,916	(41.7)
2015	83,005	(100.0)	48,698	(58.7)	34,307	(41.3)
2016	75,536	(100.0)	44,371	(58.7)	31,165	(41.3)
2017	65,389	(100.0)	38,285	(58.5)	27,104	(41.5)
2018	58,074	(100.0)	34,650	(59.7)	23,424	(40.3)
2019	53,673	(100.0)	32,519	(60.6)	21,154	(39.4)
2020	47,445	(100.0)	29,215	(61.6)	18,230	(38.4)
2021	45,531	(100.0)	28,366	(62.3)	17,165	(37.7)
2022	42,602	(100.0)	27,702	(65.0)	14,900	(35.0)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3-2022)

- 한편 2022년말 기준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66%²⁾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향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2)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12,672명) ÷ 서울시 0~12세 아동인구 수(764,399명) =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1.66%)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음.

3 종합 의견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초저출산 상태이며, 특히 서울시 합계출산율(0.59명)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로 2010년 이후 초저출산이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 가정 내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가 매우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의 저조한 이용률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4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유만희, 강석주, 김길영,
김원중,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박영한,
서호연, 신복자, 윤기섭,
이병윤, 최유희, 홍국표,
황철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출산가정 등의 양육 현실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돌봄 지원 사업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 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아이돌보미 사업”을 “아이돌보미 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u>아이돌보미 사업</u></p> <p>5. ~ 8. (생략)</p> <p>②·③ (생략)</p>	<p>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아이돌보미 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u></p> <p>5. ~ 8.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문서 번호

2023101300000044

비용추계서

요청인 : 유만희 의원

담당 : 오히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10.13.

회신일 : 2023.10.24.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 I. 비용추계 요약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돌봄 지원 사업)제1항제4호의 규정을 변경·신설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 비용이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 비용

나. 전제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제공자료(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사업) 준용
-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시 사업대상은 2021년도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연 826가구를 전제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중위소득별 차등)을 전제
-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0% 비용부담을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4년~2028년)

라. 방법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제공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611,210천원(연평균 722,242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구분	-	-	-	-	-	-	-
	소계 (a)	-	-	-	-	-	-
세입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비용 지원 (안 제6조제1항제4호)	722,242	722,242	722,242	722,242	722,242	3,611,210
	소계 (b)	722,242	722,242	722,242	722,242	722,242	3,611,210
□ 총 비용(b-a)		722,242	722,242	722,242	722,242	722,242	3,611,210

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제공자료 준용

4. 덧붙이는 의견 : 둘째 이상 출생아 수 변동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 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안 제6조(돌봄 지원 사업)제1항제4호 규정을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3,611,210천원

- 산출방식 = $\sum_{i=1}^5$ (연간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비)_i

i = 비용추계 연차(2024년~2028년)

나. 연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비 ≙ 722,242천원

○ 산출방식

= '23년 평균 지원단가¹⁾ × 50시간²⁾ × 5개월³⁾ × 지원가구수⁴⁾ × 105%⁵⁾ × 50%⁶⁾
 = 6,662 × 50 × 5 × 826 × 105% × 50%
 = 722,242천원

(단위 : 명, 천원)

합계	'21년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A)	지원대상 수 (B=A×5%)	'24년 소요예산(안) ²⁾		
			총계	시비(50%)	구비(50%)
	16,528	826	1,444,482	722,242	722,242

※ 서울시 50% 및 자치구 50% 비용부담을 전제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중위소득별 차등) 전제

- (본인부담금 지원율) 가형 100%, 나형 90%, 다형 90%, 라형 90%

-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별(가~라형) 차등 지원 취지 고려

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제공

1) 6,662원/시간

2) '22년 가구당 월평균 이용시간

3)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내 총 5개월 지원

4) 21년도 서울시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 × 5%

5) 평균 지원단가 5% 인상 간주, '21년→'22년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률 5%

6) 시 및 자치구 50%씩 부담